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08호 2022. 12. 1.(목)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803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2-2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7
- 사천시 고시 제2022-258호 곤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 8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1578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 12
- 사천시 공고 제2022-1580호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17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사천시 규칙 제80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을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통장”을 “이·통·반장”으로, “리·통에 3년 이상(단,신설 리·통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거주하는”을 “리·통·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을회의”를 “제2조에 따라 마을회(마을 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통장은 마을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추천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단, 마을회의 추천”을 “다만, 마을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공개모집은”을 “모집 공고는”으로, “공고”를 “게시(단,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재모집 공고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심사기준은 거주기간, 봉사경력, 상훈, 면접 등”을 “심사는 별표 4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 5의 면접기준표에 따라”로,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을 “공정하게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를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주민자치회의 협의”로,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제3호·제4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읍·면·동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이·통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제4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필요시 구성하고, 심사”를 “심사”로, “해산”을 “해산한다”로 한다.

2. 위원: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등 지역사회에 밝은 사람으로 구성하며, 심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주민자치회의 협의”로 한다.

① 반장은 이·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통·반장을 임명한 때에는 임명결과”를 “이·통·반장의 임명·해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 결과”로, “5일 이내에 도지사”를 “5일 이내에 경남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명·해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서식의 등록 대장에 기록하고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별표 4 및 별표 5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신설 2022.12.1.>

이장·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제4조제3항제2호 관련)

□ 심사대상자(읍·면·동 리·통)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택)
주소							(휴대폰)

□ 심사기준 (기준일: 공고일 현재)

심사항목 (비율)	배점기준	배점	특점	비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리·통 관할구역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합산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신설 리·통의 경우 해당 읍·면·동 거주기간으로 함
	7년 이상 ~ 10년 미만	13		
	4년 이상 ~ 7년 미만	11		
	1년 이상 ~ 4년 미만	9		
	1년 미만	5		
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	250시간 이상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200시간 이상 ~ 250시간 미만	13		
	150시간 이상 ~ 200시간 미만	11		
	150시간 미만	9		
	봉사활동 경력 없음	5		
3. 이장·통장 활동 집중도 (10)	없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장·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있음(자영업)	7		
	있음(직장인)	5		
4. 최근 5년간 상훈 (5)	장관급 이상, 사천시장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3		
	그 밖에 행정기관	1		
	없음	0		
5. 이장·통장 활동 경력 (5)	3년 이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미만일 경우 '0점'
6. 면접(50)		50		
총 계		100		
확인자(읍·면·동장)		직급	성명	(인)

※ 상기 심사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사천시 고시 제2022 - 2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사 천 시 장

1. 하천점용 현황

점용자	성 명	사천시장 (환경보호과장)	주 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하천명		봉남천(지방하천)		
점용개요	위 치	사천시 봉남동 472-10번지		
	면 적	7.5㎡		
	기 간	허가일로부터 5년		
	목적 및 개요	가설건축물(이동식 화장실) 설치		
열람서류 :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 신청사유 : 하천점용허가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사천시 고시 제2022-258호

곤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8-102호(2018.6.7.)로 최초 고시되고 사천시 고시 제2022-117호(2022. 6. 16.)로 최종 시행계획 변경 고시된 「곤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시행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1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곤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곤명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솔사, 다자연 녹차 등 자원을 활용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
3. 사업비 : 5,400백만원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4. 주요 사업내용(변경없음)

가. 시행계획 내용

사 업 분 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 계			5,400	
기초생활 기반시설	소 계		3,697	
	다솔문화센터조성	부지 2,646㎡ (건축 연면적 303㎡)	1,927	
	녹차공원조성	A=436㎡	174	
	공동생활 홈조성	공동홈 조성 1식	405	
기초생활 기반시설	배후마을 연결도로	L=260m	506	
	김동리 산책로정비	L=785m	685	
지역경관 개 선	소 계		915	
	중심 가로경관정비	L=540m	347	
	봉명로 가로경관조성	L=580m	357	
	생태하천 정비	1식	211	
지역역량 강 화	소 계		788	
	교육 및 견학	1식	247	
	컨설팅	1식	92	
	운영지원	1식	45	
	부대비용(기본계획 수립 등)	1식	404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6.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 초 : 2016년 ~ 2022년 12월 30일

■ 변 경 : 2016년 ~ 2023년 06월 30일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 토지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이동전	이동후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녹차공원 조성													
1	곤명	봉계	290	290	대	170	170	사천시					
2	곤명	봉계	291	291	대	143	143	사천시					
3	곤명	봉계	산45-1	산45-6	임	4,432	88	국토교통부					
2) 공동생활 홈조성													
1	곤명	봉계	147	147-1	전	1,018	320	사천시					
3) 김동리 산책로 정비													
1	곤명	봉계	910-1		천	553	142	경상남도					
4) 중심 가로경관정비													
1	곤명	봉계	206-3	206-3	답	3	3	사천시					
5) 봉명로 가로경관조성													
1	곤명	봉계	181-23		도	562	454	김*원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				
2	곤명	봉계	216	216-3	대	340	4	사천시					
6) 다솔문화센터 조성													
1	곤명	봉계	205-1	205-6	철	4,284	2,646	사천시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 토지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이동전	이동후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녹차공원 조성													
1	곤명	봉계	290	290	대	170	170	사천시					
2	곤명	봉계	291	291	대	143	143	사천시					
3	곤명	봉계	산45-1	산45-6	임	4,432	88	국토교통부					
2) 공동생활 홈조성													
1	곤명	봉계	147	147-1	전	1,018	320	사천시					
3) 김동리 산책로 정비													
1	곤명	봉계	910-1		천	553	142	경상남도					
4) 중심 가로경관정비													
1	곤명	봉계	206-3	206-3	답	3	3	사천시					
5) 봉명로 가로경관조성													
1	곤명	봉계	181-23		도	562	454	김*원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				
2	곤명	봉계	216	216-3	대	340	4	사천시					
6) 다솔문화센터 조성													
1	곤명	봉계	205-1	205-6	철	4,284	2,646	사천시					
7) 배후마을 연결도로 조성													
1	곤명	봉계	616	616-2	전	1,458	730	사천시					

8. 관계 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사천시 공고 제2022-1578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간곡골 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사 천 시 장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간곡골 소하천	간곡골 소하천 정비공사	정동면 감곡리 593-5	정동면 감곡리 11-2	-	456	-	2022년 12월	2023년 12월	소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보상 1식

열람서류

1. 도시관리계획(하천:간곡골소하천) 결정(변경)
2. 도시계획시설(하천:간곡골소하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3. 실시설계도서
4.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사천 도시관리계획 [하천:간곡골소하천] 결정(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방재시설(하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6	간곡골 소하천	하천	정동면 감곡리 593-5	정동면 감곡리 11-2	-	456.0	4.0 ~ 10.0	4,633.0	-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간곡골 소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간곡골소하천) 신설 B = 4.0~10.0m L = 456.0m A = 4,6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통한 수자원의 체계적인 정비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신설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도시계획시설(하천:구룡소하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정동면 감곡리 593-5번지 정동면 감곡리 1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하천:간곡골소하천)사업

나. 명 칭 : 간곡골 소하천 정비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L=456.0m , B=4.0m~10.0m (A=4,63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사천시장(건설과장)

나.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착 수 일 : 시행계획의 공고일

나. 준공예정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 토지조서

순 번	위치 (사천)	지번 (당초지번)	지 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정동면 감곡리	593-5	유	17,874	3,020	국 (농림축산식품부)					
2	〃	596	도	1,091	70	국(국토교통부)					
3	〃	39-5	답	1	1	강O희	사천시 정동면 감곡리 000				
4	〃	39-6	답	34	34	강O희	사천시 정동면 감곡리 000				
5	〃	27-10	답	78	78	원O현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000				
6	〃	27-8	구	71	71	사천시					
7	〃	27-9	구	20	20	사천시					
8	〃	27-11	과	45	45	유O숙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000				
9	〃	34-1	도	34	16	사천시					
10	〃	27-15	과	152	152	유O숙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000				
11	〃	31-1	도	6	6	사천시					
12	〃	30-1	도	10	10	사천시					
13	〃	27-12	답	3	3	전O규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000				
14	〃	30-2	답	58	58	전O규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000				
15	〃	29-1	대	51	51	전O규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000				
16	〃	598	도	198	198	국(국토교통부)					
17	〃	산103-2	임	18	18	진O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000				
18	〃	27-13	답	9	9	전O규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000				
19	〃	27-5	답	3,183	233	전O규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000				
20	〃	27-14	답	5	5	전O규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000				
21	〃	28-1	답	22	22	정O균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000				
	소계			22,963	4,120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순 번	위치 (사천사)	지번 (당초지번)	지 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2	정동면 감곡리	592	도	387	5	국(국토교통부)					
23	〃	21-1	답	212	212	정대균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458-20 현대아파트 207-2501				
24	〃	20-1	전	23	23	강만순	부산 해운대구 중동 1224-1				
25	〃	11-2	답	273	273	이준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3길 58, 401호 (역삼동, 위드빌)				
	소계			895	513						
	합계			23,858	4,633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사천시 공고 제2022-1580호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2019.4.30.제정, 2020.5.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건축물관리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 라.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 마.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바. 해체공사감리자 교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사.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아.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건축과)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213, FAX: 831-6034)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건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건축물관리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라.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 마.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바. 해체공사감리자 교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 사.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아.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2. 1. ~ 2022. 12. 21.(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예정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사천시 건축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건축구조 분야)(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2.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한 골뚝 또는 미사용 골뚝

제7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조안전 보수·보강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2. 화재안전 보수·보강

3. 에너지 성능 보수·보강

4. 보수·보강이 불가능한 공작물의 해체공사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보수·보강 등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중 건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2.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12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8호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빈 건축물 정비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3.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건축조례」 제25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보수·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

규 모 별	지원기준	지원한도
연면적 200㎡ 미만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3,000,000원
연면적 200㎡ 이상 ~ 1,000㎡ 미만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6,000,000원
연면적 1,000㎡ 이상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10,000,000원

2. 공작물

규 모 별	지원기준	지원한도
20년이 경과한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15,000,000원

※ 총 사업비 중 부가가치세 제외

[별지 서식]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보수·보강 등 보조금 지원 신청서				
건물 개요	건 물 명			
	위 치		가 구 수	
	사 용 승 인 일		기 타	
신 청 내 용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p>「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 (남·여)</p>				
<p>사 천 시 장 귀하</p>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견적서(내역서 포함) 사본, 자부담 입증서류(통장 사본 등)			

관 련 법 규

□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0조의4(현장점검)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21조의3(현장점검)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工程)이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